

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(별표) 시험수당지급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

(별표)

시험수당지급기준표

수 당 별	구 분		수 당 액	비 고
출제수당	객관식	6급이하 시험 (문제당)	3,000원	
	주관식	6급이하 시험 (1과목 위원당)	45,000원	
채점수당	객관식	6급이하 시험 (응시자1인 1과목)	22원	
	주관식	10부까지 기본료	30,000원	
		1부초과 부당	800원	
면 접 및 실기시험 수 당	5급이상 (일당)	10명까지 기본료	40,000원	상한 50,000원
		10명초과 1인당	1,000원	
	6급이하 (일당)	10명까지 기본료	20,000원	상한 50,000원
		10명초과 1인당	500원	
종사원 (일당)	1인당	10,000원		
문제편집 수 당	일 당		10,000원	
문제선정 심의수당	과 목 당		45,000원	
감시수당	공 휴 일		20,000원	
	평 일		10,000원	

*비고: 위 표는 시험수당지급 기준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시험의 규모 성질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과 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집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

연금작업시의 하루는 8근무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3일로 간주할 수 있다